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1. 12. 8 선고 2021가단3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길웅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소연

변 론 종 결 2021. 10. 27.

판 결 선 고 2021. 12.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와 소외 C(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이에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5. 2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C(주민등록번호 1 생략)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원고의 청구 요지

원고는 소외 C에 대하여 200,000,000원의 금전채권(이하 ‘이 사건 피보전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5. 22. 체결된 증여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한다.

[한편, 원고는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청구원인에 추가하는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변경된 청구취지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형태 그대로이고 청구원인의 추가 형태가 예비적인지 선택적인지도 불명확하여, 청구원인의 변경이 옳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민사소송법 제263조에 따라 그 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한다(더구나 아래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결과 추가된 청구원인도 결국 받아들여질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2.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피보전채권의 성격에 관하여 원고는 당초 소장에서 대여금이라는 뜻이 주장하다가, 변론 과정에서는 ‘피고의 별건 소송 승소 후 그 토지를 매도하였을 때’를 기한으로 설정한 증여금이라고 주장하였으며, 변론종결 후에는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이라고 주장하는 취지의 참고서면을 제출하였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법조계 로비를 통하여 C의 별건 소송(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11나835 사건)에서 C을 승소시켜 주는 대가로 C이 원고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약정은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이 결부된 경우에 해당하여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위 약정에 기하여 성립한 이 사건 피보전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성훈

[별지]

부동산 표시

1. 밀양시		답 1527㎡
2. 밀양시		답 1681㎡
3. 밀양시		전 684㎡
4. 밀양시		답 1306㎡
5. 밀양시		전 476㎡
6. 밀양시		답 1207㎡

- 이 상 -

